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82번
- 제출자 : 박환희 의원 외 44명
-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 회부일 : 2022년 9월 2일

2. 제안이유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다각화하여 더 많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서울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사업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이 학생 및 청소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위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 등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라목).
-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다. 입법예고(2022.9.7. ~ 9.11.)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본 개정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용하고 있는 법률의 제명변경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다. (생략)</p> <p>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p> <p>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p> <p>1. -----이란 ----- -----.</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 ----- ----- ----- -----</p> <p>2.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p>

제5조(사업) (생략)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생략)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임원) ① ~ ④ (생략)	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⑤ _____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_____.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에서 정비하려 용어는 제명과 조항 간 띄어쓰기, 변경된 법률 제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어의 정비

- 안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정의)
- 안 제2조 :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뜻은 다음과'
- 안 제2조 제1호 : '이라 함은' ⇒ '이란'

※ 준용 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목 띄어쓰기의 정비

- 안 제2조 제1호 가목 : 「초·중등 교육법」제2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안 제2조 제1호 라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나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
- 안 제2조 제2호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안 제9조 제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용어의 정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의 정비는 한자로 된 법률제명의 한글화로 시작하여, 일본식 용어, 어려운 용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투 표현 등을 정비하여 한글 창제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학생 추천 근거 조문의 신설로, 현행 제6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안 제2항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청소년들이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관 또는 단체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 장학사업의 대상, 선정요건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조례는 총 7개이며, 이중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관련 법령 등을 제외하고,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을 규율하는 법령과 조례는 2개(「교육기본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로, 추천여부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장학사업별로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서울장학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대상, 요건 등에 대해 규율하는 법령과 조례

- 「교육기본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교육청 및 학교 장학금 관련 법령과 조례

- 「교육기본법」, 「장학금 규정」,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시립대학교 장학금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 「교육기본법」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獎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 서울장학재단은 총 1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천으로 운영하는 장학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학교장(교사), 교수 등의 추천을 받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추천자를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장학대상자를 인지하여 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장학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중 '추천'방식 활용현황 >

장학금명	지원성격	추천자	장학대상 결정 방법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			
1. 서울꿈길장학금	학업장려금	(대안)학교장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선정위원회
2. 서울희망고교진로장학금		학교장(교사)	
3.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		학교장(교사)	
4. 서울희망SOS장학금		자치구	
5. 오토꿈이름서울장학금		학교장(교사)	
대학생 대상 장학금			
6. 서울평화희망장학금	학업장려금	공익활동기관 관계자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생선정위원회
7. 유명아학업장학금		-	
8. KT&G서울희망디딤돌장학금		-	
9.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등록금	학교장	
10. 독립유공자후손장학금	학업장려금	-	
11. 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금		-	
12.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	
13. 서울희망대학장학금	등록금	-	
14. 서울우수인재장학금	학업장려금	소속 학과 교수	
15. 청춘star장학금		교교시절 지도교사, 복지시설 교사, 소속대학교수	

나. 세부내용 검토

- 안 제6조제2항 신설은 장학금 신청 시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의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인 학업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배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예산의 심의·조정,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를 통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조사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추천이라는 방식을 통해 장학생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4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 의무)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법률자문 결과 「지방자치법」 제44조제3항은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장학사업의 요건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이 진행될 경우라면 법령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보다 다수의 의견이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결과 〉

자문내용 1 : 「지방자치법」 제44조,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자문1	자문2	자문3
적정 ‘의원의 추천’이 장학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장학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면, 지위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음.	적정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조례 개정 지양 서울특별시의회와 장학재단은 특별한 관계(예산·결산)에 있어 의원의 장학금 추천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둘째,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은 기부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직무상 행위’와 같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기부행위는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적 기부행위의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라는 ‘개인’이 ‘추천’이라는 방식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의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추천만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본 개정안은 조례상 근거에 따라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조례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으며,
 - 장학사업의 대상자는 ‘서울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장학생 선정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음.
- 「공직선거법」은 ‘추천’이라는 행위가 아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정은 추천-신청-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선발하는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추천이 곧 재산상 이익의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개인의 명의로 추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각종 우려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을 취합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의로 서울장학재단에 추천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학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개인의 명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서울장학재단의 명의로 지급되는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 결과 〉

자문내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자문1	자문2	자문3
적정 장학금 지급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조례 개정 가능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적정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성명을 밝히거나, 누가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 라. (생략)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③ (생략)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셋째,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 법률은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공무원과 학교의 장, 교직원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의원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으로 장학생 선발에 선정 또는 탈락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 부정청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발굴 등을 다각화 하는 한편, 더 많은 장학사업의 대상자들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 장학대상의 선정 및 탈락의 결정은 선정위원회가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만으로 장학금 지급의 확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등을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장학재단의 사무의 개선 및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조사 또는 예산심의가 아닌 추천자의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이하 생략)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 「지방공무원법」 제2조는 공무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이 공무원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고, 동 법률의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지방의회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임.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이하 생략)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넷째, 「청탁금지법」 제정(2015.3.27.) 및 시행(2016.9.28.)에 따라 2016년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요건 중 ‘추천’을 모두 삭제한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09-1312)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를 가결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장학재단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추천의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방식을 활용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추천받은 학생과 청소년 중에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들 중 심의를 거쳐 장학대상을 확정하는 등 추천과 신청 그리고 심의·확정 등을 각각의 단계로 구별하여, 서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 현행 장학대상 선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이 장학대상 선정에 있어 확정적 효력, 결정력 등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운영할 경우 장학대상 선정에 있어서 부정청탁 등의 우려를 배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추천을 받은 학생과 청소년만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추천이 없는 자들에게는 추천이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추천받은 자를 우선하여 장학대상으로 선정한다면 추천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공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 추천 여부를 배제하여 심의할 경우 추천의 가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본 개정안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본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장학사업에 따라 별도의 운영방안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3278호, 2015. 3. 27. 제정, 시행 2016. 9. 28.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 의안번호 09-131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일 : 2016.08.12.
- 상임위원회 심사경과
 - 회 부 일 : 2016.08.16.
 - 상 정 일 : 2016.09.07.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본회의 심사경과
 - 심사보고일 : 2016.09.09.
 - 의결일 : 2016.09.09.
 - 처리결과 : 가결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의안번호 09-1312)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u>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u>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u> 2. <u>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u> 3. <u>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u> 4. <u>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u> 5. <u>실직, 파산, 질병등 기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중 학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u> 	<p>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u>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u> 2. <u>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u> 3. <u>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u> 4. <u>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한 학교의 학생</u> 5. <u>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u>

-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은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함에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공공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유지가 어려운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의 추천으로 인한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사업 운영에 있어 신중과 공정성·공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